

계약조건

1. **정의.** "AkzoNobel," "별첨," "구매자," "인도조건," "발효일," "소요시간," "월간최대수량," "포장," "지급조건," "가격," "제품," "수량," "주문규격," "사양," "계약기간," 및 "보증기간" 등의 용어들은 위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본 "계약" 이란 앞 페이지와 별첨을 포함하는 본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들" 이란 AkzoNobel 및 구매자 말하고; "당사자" 란 AkzoNobel 또는 구매자를 말한다.
2. **매매.** 계약기간동안, AkzoNobel 은 제품의 수량을 해당 가격에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구매자는 이를 AkzoNobel로부터 구매한다.
3. **예보.** 매 분기 첫날로부터 30 일 전까지, 구매자는 AkzoNobel 에게 다음 12 개월간 예상되는 제품의 구매수량 예보를 전달한다. 동 구매수량 예보는 구매자나 AkzoNobel 을 구속하지 않는다.
4. **주문.** 구매자는 매번 월간최대수량, 소요시간 및 주문규격과 부합되는 제품 주문서 또는 제품신청서를 제출한다. 본 계약상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AkzoNobel 은 월간최대수량을 초과하거나, 소요시간보다 부족한 시간내에 인도를 요청하거나 주문규격 또는 주문규격의 배수가 아닌 제품에 대한 주문, 신청을 수락 또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 소요시간이란, 주문한 시각과 제품의 선적 준비가 된 시각 사이의 시간을 말한다.
5. **수량 변경.** 구매자는 주문 또는 출시한 제품의 수량변경이 10% 이하일 경우, 해당 수량변경을 이유로 제품의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구매자는 인도된 제품의 수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품의 인도수량에 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구매자는 AkzoNobel 의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AkzoNobel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구매자는 청구서에 반영된 제품의 인도수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위험부담과 소유권.** 위험부담은 인도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적용되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 AkzoNobel 은 구매자에게 인도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지급을 보장받기 위한 담보권을 유지하고, 구매자는 AkzoNobel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품에 대한 담보권의 확보 또는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서를 제공한다. 이 경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위험부담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과 동시에 구매자에게(AkzoNobel 의 담보권을 전제로) 이전된다. 그 밖의 경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AkzoNobel 에게 있으며,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 구매자는 제품을 미사용한 상태로 AkzoNobel 을 위하여 수탁보관하고, AkzoNobel 은 본 제 6 조에 따라 자신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수거를 위해 구매자의 부지 내에 진입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경우든지 구매자는 통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구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는 제품을 절권, 담보권, 기타 부담을 설정할 수 없다.
7. **제품 단종.** AkzoNobel 은 언제든지 구매자에게 3 개월 사전 서면통지하여 어느 제품의 제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동 통지기간 이후 해당 제품은 즉각 본 계약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통지에 본 계약에서 제거될 경우,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추가적인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고 자동 해지된다.
8. **가격과 지급.** AkzoNobel 은 구매자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한 청구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한다. 구매자는 지급조건에 따라 AkzoNobel 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구매자는 상계, 반소, 감액 또는 유사한 공제를 이유로 AkzoNobel 에게 지급할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지 못한다. 구매자는 AkzoNobel 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일 이전에 이의 금액과 이의의 근거를 기재한 서면으로 AkzoNobel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없는 금액은 지급조건에 따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별도로 이의를 통지하지 아니한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정확히 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할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령, AkzoNobel 이 청구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AkzoNobel 이 잔액을 수령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AkzoNobel 의 전액청구에 대한 이행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kzoNobel 이 본 계약상 지급받을 금액을 수취하느라 소요된 모든 비용(수취 대리인이나 변호사의 보수를 포함)은 AkzoNobel 가 요구하는 즉시 구매자가 보상한다. 구매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또는 구매자의 지급능력, 안정성이 AkzoNobel 에게 불안스러울 경우, AkzoNobel 은 독자적인 재량으로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이 지급되고 구매자의 지급능력이나 안정성이 AkzoNobel 에게 만족스러워 질 때까지 인도를 중단할 수 있다.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는 월 1.5% 또는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금리 가운데 더 낮은 금리의 이자가 발생하며, 구매자는 이를 AkzoNobel 에게 지급한다. 이자발생기간은 대금지급기일부터 AkzoNobel 이 대금 전액을 수령하는 때까지이며 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인도중단 여부를 불문한다.
9. **세금.** 구매자는 정부기관이나 기타 기관이 제품의 구매, 수입, 판매나 기타 유통에 관하여 부과하는 모든 세금, 요금, 부과금 기타 보수를 징수, 송금 및 지급할 책임이 있다.
10. **보증.** AkzoNobel 은 보증기간 동안 제품이 사양에 기재된 성능기준을 충족할 것임을 구매자에게 보증한다("보증"). 본 보증은 AkzoNobel 의 유일한 보증이다. AkzoNobel 은 제품제품의 적용이나 용도 등에 관하여 제품성 또는 특정목적 부합성 또는 비침해에 관한 명시적인 보증을 포함하여 어떤 명시적, 묵시적, 구두 혹은 서면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를 모두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또한, 이에 한하지 않고 제품의 품질이나 명세에 관한 모든 보증, 사양과 기타 조건(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고 법으로 정한 것들)을 부인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본 계약에서 배제한다. 구매자는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AkzoNobel 이 제공한 또는 AkzoNobel 을 대리하여 제공된 보고, 약속 또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보증기간 이후, AkzoNobel 은 더 이상 제품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보증기간 만료 후 하차나 품질지하에 관하여 AkzoNobel 로부터 보상을 구할 수 없다는 점에 합의한다.
11. **보증 제외.** AkzoNobel 은 다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품의 고장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보증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a) 환경오염, 반달리즘, 기타 악의적인 손해, 화재, 홍수, 폭풍우, 기타 악천후 또는 천재지변 등 AkzoNobel 의 통제에 불가능한 원인; (b) AkzoNobel 이 제조하지 아니한 제품의 사용 또는; (c) 구매자가 본 계약의 규정 또는 제품에 관하여 AkzoNobel 이 발간하거나 또는 AkzoNobel 을 대리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한 지침이나 제품설명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지침이나 제품 설명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품을 위한 표면처리와 전처리 및 제품의 적용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 AkzoNobel 은 구매자 또는 제 3 의 계약자나 사용자의 기량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AkzoNobel 은 구매자, 제 3 의 계약자나 사용자 또는 기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의한 제품의 검사, 응용(표면처리 포함), 설치나 유지보수 기량이 잘못되어 적,간접적으로 초래되는 제품의 손해, 고장이나 품질지하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제 3 자에 의한 수선이나 수선 시도는 AkzoNobel 의 서면에 의한 지시에 따라 수행되지 않는 한, 보증을 무효화시킨다.
12. **부적합 제품에 대한 채무.** 제품의 고장, 불량이나 하자에 대하여 구매자가 AkzoNobel 을 상대로 제기하는 구매자의 유일한 청구원인은 보증위반에 대한 청구가 될 것이며, 보증위반이 있을 경우, AkzoNobel 은 자신의 선택과 비용에 따라 보증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수선, 교체하거나 또는 (제품을 수선 또는 교체할 수 없을 경우) 크레디트를 발급한다. 본 보상은 보증위반에 대한 구매자의 유일한 보상이다.
13. **책임제한.** AkzoNobel 은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효과적인 품질관리 실패 또는 AkzoNobel 의 조인 또는 AkzoNobel 이 제공한 지침이나 산업기준에 따라 제품의 저장, 사용이나 기타 취급을 하지 못한 원인으로 초래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AkzoNobel 은 이윤손실, 영업손실, 가치하락 또는 영업권 소진 또는 어떠한 간접적, 우발적, 특별, 징벌적 또는 결과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 불법행위(과실 포함), 법에 정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구매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AkzoNobel 의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손실 또는 제품의 공급에 관한 기타 손실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부담하는 책임한도는 본 계약상 제품의 구매대금 또는 200,000 유로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다음에 관한 AkzoNobel 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a) AkzoNobel 의 과실로 초래된 사망이나 부상; (b) 사기 혹은 기망적인 허위진술 또는 (c) AkzoNobel 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불법적인 사항.
14. **위험.** 구매자는 제품을 잘 알고 있고 익노벨의 제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품의 취급, 이송, 사용, 저장과 처분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구매자는 제품에 관한 모든 적절한 안전 취급과 사용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안전 및 보건관련 정부 요건을 준수하며, 직원, 대리인, 계약자, 고객과 제 3 자에게 제품의 적절한 사용과 취급요건과 제품의 취급, 이송, 사용, 저장과 처분 등과 관련된 위험에 관하여 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15. **서비스.** AkzoNobel 이 기술적 또는 기타 정보, 조인, 제안, 지원, 작업, 교부물 또는 서비스("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경우, 유/무료에 상관없이, AkzoNobel 은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 제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과 비침해에 대한 명시적인 보증을 비롯하여 구두 혹은 서면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그리고 AkzoNobel 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이나 본 계약의 기타 조항은 AkzoNobel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6. **대여 장비.** AkzoNobel 이 응용, 혼합, 착색, 저장, 투여장비 혹은 어떠한 종류의 장비("대여장비")를 구매자에게 유/무료로 지급할 경우, 구매자는 대여장비를 제품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대여기간 동안 언제나 대여장비를 점유, 보관 및 관리하고 대여장비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에 관하여 구매자로부터 적절하게 지도를 받은 구매자의 직원들 이외의 다른 사람의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대여장비는 언제나 AkzoNobel 의 자산이며 구매자는 대여장비에 대한 AkzoNobel 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AkzoNobel 이 요구하는 모든

문서와 양식을 제공한다. (a) AkzoNobel의 계약으로 인해 든지 AkzoNobel의 요구 즉시 또는 (b)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 즉시, 구매자는 대여장비를 합리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받았던 상태로 대여장비를 AkzoNobel에게 반환한다. 대여장비의 선적, 설치와 철거비용은 전액 구매자가 지급한다. 구매자는 대여장비의 모든 손실위험을 부담하고 대여장비의 모든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되, 정상적인 마모는 예외로 한다. 어느 사람이나 단체가 구매장비의 운전, 유지보수 혹은 소유 등 대여장비로 인하여 혹은 대여장비와 관련하여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손실, 손해, 부상, 사망 및 채무에 대하여 구매자는 AkzoNobel에 대하여 배상, 방어, 보호 및 면책한다. 구매자는 대여장비를 안전한 상태로 운전하고 유지보수하며 직원들을 그에 따라 지도한다. 구매자는 자체 비용과 경비로 AkzoNobel이 수락하는 보험업자가 발급한 다음과 같은 보험증권을 취득한다: AkzoNobel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기재하고 대여장비를 화재, 도난, 홍수, 지진이나 기타 손해로부터 대여장비의 완전교체가액까지 보장하며, (b) AkzoNobel을 추가 피보험자로 기재하고 대여장비의 운전, 유지보수 또는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AkzoNobel이 수락할 수 있는 보장금액과 본인부담액을 AkzoNobel에게 보장. AkzoNobel은 대여장비에 관하여 제품상, 특정목적 부합성이나 비침해에 관한 명시적인 보증을 비롯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구두 혹은 서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각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AkzoNobel은 대여장비로 인하여 또는 대여장비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어떤 점도 또는 본 계약상 어떤 점도 AkzoNobel에게 대여장비 제공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7. **채무불이행 통지.** 구매자는 알고 있는(또는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본 계약의 어떠한 조건의 위반에 대하여 즉시 AkzoNobel에게 위반에 관한 서면통지를 제공하고 AkzoNobel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 위반에 관련된 손실이나 손해에 관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에 한하지 아니하고, 구매자는 제품이 제 10 조의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7일 이내에, 단 제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후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AkzoNobel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위에 기재된 기한 이내에 AkzoNobel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8. **청구.** “채무불이행 통지” 규정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지는 모든 청구는 청구 발생일 이후 1년 이내에 “법률 및 분쟁해결” 조항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하여 회부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위에 기재된 기한 이내에 청구를 분쟁해결을 위해 회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매자는 해당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 해제 혹은 기타 중단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19. **해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AkzoNobel은 “가격 및 지급” 조항과 “준법: Responsible Care®”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또는 구매자의 경영, 소유나 지배가 변경될 경우, 구매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이든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위반사항이 시정가능할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서면 요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b) 상대방 당사자가 기업구조조정 또는 기업합병을 목적으로 지분능력을 가진 임의 청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임의 또는 강제)이 개시되거나, 사업이나 그 일부에 관하여 관재인, 관리인, 법정관리인 또는 수탁관리인을 임명하거나, 당사자의 법정관리인의 임명을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청산 또는 당사자에 관한 법정관리명령을 위한 결의가 결정되거나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거나, 또는 당사자가 어떠한 관할지에서 위에 기재된 사유에 준하는 사유나 단계에 있을 경우(각각, “부도사유”). 해지가 되는 경우에도 구매자는 본 계약의 위반에 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 **해지의 효과.** 본 계약의 해지나 만료시 (a) 본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중단되나, 이미 발생한 권리나 채무로서 명시적으로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규정되거나 성질상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고; (b) AkzoNobel은 추가 책임없이 인도받지 아니한 제품의 주문이나 신청을 취소할 권리(의무는 아님)가 있고; (c) 구매자의 지급채무 불이행, 재정책임이나 재무안정성이 AkzoNobel에게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도사유로 인하여 해지가 초래될 경우, 구매자는 인도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즉각 지급하여야 한다.
21. **불가항력.** 어떤 당사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저지당할 경우 본 계약상 의무이행 실패에 대하여(본 계약상 지급기 도래한 지급을 행할 의무 이외)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전쟁(선포 여부 불문), 국가긴급사태; 부적절한 운송설비; 기계나 장비 고장; AkzoNobel이 제품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자체, 공급품, 연료나 전력을 AkzoNobel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확보불가능; 화재, 홍수, 폭풍우 또는 천재지변;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분쟁; 외국, 국내 혹은 지역의 유효/무효한 정부의 명령이나 조치; 또는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이와 유사하거나 다른 종류의 기타 사유(각각,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의 직원이 관련된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분쟁은 해당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이 미치는 제품의 수량은

AkzoNobel이 공급하고 구매자가 구매하는 총수량에서 공제한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제품의 부족기간 동안, AkzoNobel은 가장 공급량을 AkzoNobel과 AkzoNobel의 모회사, 자회사와 계열사 및 AkzoNobel과 그들 각각의 고객, 구매자,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에게 AkzoNobel이 공급하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분배할 수 있다. 불가항력 사유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거나 또는 6개월을 초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이든지 어느 쪽의 책임 부담도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7일 이상 사전 서면통지를 송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당 통지에 기재된 해지일 이전에 불가항력 사유가 약화된 경우 해지는 효력이 없다.

22. **법률 및 분쟁해결.** 본 계약 및 본 계약 당사자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련 분쟁을 포함하여 본 계약 관련 분쟁과 본 계약상 이행에 관한 분쟁은, AkzoNobel의 주소본 계약 첫 페이지에 기재)가 소재한 국가 및 해당될 경우나 주나 군의 법률에 의하되, 항상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다른 관할지 법률의 적용을 지시하는 준거법 선택 규칙을 배제한다.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다음 방식으로 해결한다. 어느 당사자이든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분쟁의 성질과 당사자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한 분쟁통지(“분쟁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는 분쟁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에 관한 답변 당사자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으로써 답변한다(“분쟁 답변서”). 분쟁답변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고위급 대표들이 성실하게 협상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분쟁 답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어느 당사자이든지 분쟁의 주제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AkzoNobel의 주소(본 계약 첫 페이지에 기재)가 소재한 도시에서 소재하는 법원(연방법원, 국가법원, 주법원, 도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주제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해당 도시에 없을 경우, 소송은 분쟁의 주제에 관할권이 있고 해당 도시에 근접한 연방법원, 국가법원, 주법원, 도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관할권과 법정지에 동의하고 합의하며 본 계약상 이행으로 인하여 혹은 본 계약상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의 당사자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로써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원에서 그리고 해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항고심사권이 있는 법원에서 전속 관할로 해결한다는 점에 합의한다.
23. **양도 및 하도급.** 구매자는 AkzoNobel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나 일부의 이익을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수여하거나 신락 보관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본 계약상 의무를 도급하거나 갹개할 수 없다. AkzoNobel은 구매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나 일부의 이익을 양도, 이전, 담보권 수여, 신락 또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본 계약상 의무 전부나 일부를 도급하거나 갹개할 수 없다.
24. **제 3자 수익자 없음.** 본 계약상 어떤 규정도 당사자들의 승계인이나 허가받은 양수인을 제외하고 제 3자에게 이익이나 권리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25. **당사자들의 관계.** 본 계약의 어떤 점도 당사자들이 본 계약상 취하는 어떤 조치도 당사자들 사이에 파트너십, 조인트벤처 또는 대리인 관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6. **부분.** 본 계약은 어떠한 수의 부분으로 체결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 의하여 별도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나, 각 당사자가 적어도 1부의 부분을 체결할 때까지 발효되지 아니한다. 각 부분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모든 부분이 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27. **비용과 경비.**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협상, 준비,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자체 비용을 부담한다.
28. **법률준수; Responsible Care®.** 구매자는 (a) 모든 적용법률과 규정과 (b) 국제화학산업 단체협의회(ICC)의 Responsible Care® Global Charter를 준수한다. AkzoNobel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a) 구매자가 적용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b) 구매자가 ICC의 Responsible Care® Global Charter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을 경우, AkzoNobel은 구매자에게 제품의 인도를 중단할 수 있다. 구매자가 AkzoNobel의 통지에 명시된 제품의 인도 정지 기간 이내에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할 의사가 없을 경우, AkzoNobel은 구매자에게 서면통지를 송부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9. **경쟁과 부패방지/서물방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관하여 경쟁법, 부패방지 또는 뇌물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시로 발표하는 모든 관련 법률, 규칙, 규정과 법령 요건을 항상 준수한다. 각 당사자는 항상 본 계약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중대하게 필요한 모든 인증, 인가, 면허와 허가를 자비로 취득하여 유지한다. 구매자는 AkzoNobel의 요청이 있을 경우, AkzoNobel이 구매자의 본 조항에 따른 의무 준수를 검증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와 구매자의 기록, 직원과 현장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30. **수출규제.**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조건 및 규정이 수시로 개정 보충되는, EU의 일반공용품목 리스트와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이전, 증개 및 수출의 통제를 위한 유럽공동체의 제도를 정하는 2009. 5. 5.자의 회규정과 결합하여 군사기밀과 군사장비의 수출통제에 관한 공동 통제를 정의하는 2008. 12. 8.차 유럽의회의 공동입장,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내 법규 및 미국 수출관리법, 수출관리규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무기거래규정, 적성국교역법, 국제비상경제권법과 해외자산관리규정("수출통제법규들"로서 수시로 개정 보충)을 비롯한 적용법률, 규칙과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합의한다. 당사자들은 수출통제법규들의 준수에 충분히 협력하고 준수를 보장하기로 한다. 어떤 당사자도 수출통제법규들이 통제하는 물품, 기술, 데이터나 서비스를 수출통제법규들이 금지하는 인, 단체나 국가에 판매, 수출, 이전, 선적, 전용 혹은 달리 처분하지 아니한다. 구매자는 AkzoNobel 이 물품, 기술, 데이터나 용역을 판매 수출할 권리는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약적으로 인정한다. 구매자는 AkzoNobel 또는 AkzoNobel 의 세관당국이 수출통제법규들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구매자의 설비의 확인 감사/현장 조사에 합의하고 이에 협력한다. AkzoNobel 은 수출통제법규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정부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상 판매나 이행을 즉시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구매자는 수출통제법규들에 관한 위반, 혐의, 수사 또는 집행조치로 인하여 AkzoNobel 에게 발생한 벌금, 의무, 과료, 채무 또는 기타 유사한 손실(통칭하여, "손실")에 대하여, 구매자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범위 내에서, AkzoNobel 을 면책하고 손해배상한다.

AkzoNobel 의 주소(본 계약 첫 페이지에 기재)가 소재한 도시의 하루 중 시각을 말한다

31. **완전합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른 제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구매주문서, 제품신청서, 접수통지 또는 기타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식의 사용은 오직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이며 이와 같은 양식에 포함된 조건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모든 별첨과 참조에 의하여 본 계약에 포함된 기타 다른 문서와 함께 본 계약의 주제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완전한 계약에 해당하며 본 계약의 주제 사항과 관련하여 이전에 또는 동시시간대에 발생한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이해, 합의, 진술 및 보장을 대체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 이외의 상대방 당사자의 보고, 진술, 보장 또는 합의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32. **개정.** 본 계약의 개정이나 변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수권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33. **포기.**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바 이외에,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제공된 권리나 보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이는 해당 권리나 보상권 또는 여타 다른 권리나 보상권의 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여하한 권리나 보상권의 일회 또는 부분적 행사는 해당 권리나 보상권의 행사 또는 추가 행사 혹은 다른 권리나 보상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포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포기는 서면에 의하여 양쪽 당사자들의 수권 대표(들)이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34. **가분성.**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여하한 이유로 어느 관할지에서 무효하거나 불법이거나 집행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와 같은 무효, 불법성 또는 집행불가능성은 본 계약의 여타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른 관할지에서 해당 조항을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한다. 여하한 조항이 무효이거나 불법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예정된 거래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래 예정된 바대로 완결될 수 있도록 상호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원래 의사와 가능한 근접한 취지로 본 계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상한다.
35.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에 의하며 (a) 인편으로 교부된 시점에, (b) 국제적으로 공인된 상업적 특송서비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달된 시점에 또는 (c) 우편요금 선납 1 종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발송자의 우편서비스의 첫 번째 소인이 찍힌 후 3 일째되는 날(해당되는 경우 배달증명서가 요구됨)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통지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해당 당사자의 주소(또는 본 조에 따라 제공된 통지에 명시된 해당 당사자의 다른 주소)로 송달된다.
36. **제목.** 본 계약의 모든 표제 및 제목은 오직 편의를 위하여 삽입된 것으로, 본 계약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7. **공표.** 법률, 법원 또는 정부당국이나 규제당국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떤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예정된 거래나 부수적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지 아니한다. 법률, 법원 또는 정부당국이나 규제당국이 공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발표를 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와 공표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8. **언어.** 본 계약은 영문으로 작성된다. 본 계약이 복수의 언어로 번역된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본 계약에 따른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각 통지, 요구 또는 기타 통신문은 영문으로 작성되거나 영문 번역이 첨부되어야 하며 통지를 송부하는 당사자의 임원이 그 내용이 정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39. **해석.** 본 계약은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에게 또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요구하는 추정이나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된다. 본 계약에서: (a) 인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별도의 법인격 가지는 지 여부 불문)을 포함하며 동인의 인적 대리인, 승계인과 양수인을 포함하고; (b) 단수는 복수를 복수는 단수를 포함하며; (c) 성에 대한 언급은 다른 성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d) "일"에 대한 언급은 지정부터 자정까지 24 시간을 말하며 "영업일"에 대한 언급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AkzoNobel 의 주소(본 계약의 첫 페이지에 기재)가 있는 도시의 공휴일 이외의 날을 말하고; (e) 하루 중 시각에 대한 언급은